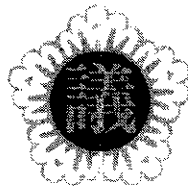


2004.9.13~9.20

제231회임사회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기획행정위원회
전문위원 이상만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4년 9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9월 6일

3. 제안이유

노근리사건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,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
의 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의 증원

4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를 2,484명에서 2,494명으로 10명 증원(안 제2
조)

나. 집행기관의 정원을 1,383명에서 1,393명으로 10명 증원(안
제2조 제1호)

※ 의회사무기구, 소방공무원, 교육공무원 정원은 변동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근리사건심사
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노근리사건실무지원
단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국가기반보호업
무를 담당할 부서의 정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아 증
원하려는 것으로서

- 나.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주요업무는 희생자 심사 기본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·운영, 희생자·유족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, 호적등재, 위령사업 추진 및 의료지원금 지급 업무, 중앙 및 유관기관·단체 업무협조와 대외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, 승인된 정원은 6명으로 단장 4급 1명, 5급 2명, 6급 1명, 7급 2명이며
- 다. 국가기반보호담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태풍·홍수·화재등 자연적·인적재난은 소방방재청이 담당하고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확산등으로 인한 피해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업무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담당하는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-지방간 업무연계를 통한 범국가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
- 라. 주요업무는 국가기반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, 안전계획 수립·집행, 예방조치 및 경보발령, 인력·장비·물자동원 명령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등이며 승인된 정원은 1담당 4명으로 5급 1명, 6급 1명, 7급 1명, 8급 1명으로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운영과 국가기반보호업무 추진등 증원을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마. 다만,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및 관련업무는 영동군에 실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, 도 지원단과과 영동군의 역할 국가사무 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의 국가 지원 내용, 국가사무 인지의 여부와 국가사무일 경우 위임여부와 근거, 국가 기반보호업무와 기존 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 소관업무의 중복·보호성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붙 임 :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